정 책 논 단

이 삼 걸 (행정자치부 재정과장)

○ 이삼걸 (행정자치부 재정과장)

행자부에 오기 전 도에서 근무할 때 '내무부는 통제만 하고 앉아서 위에 군림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는 생각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내무부가 없어지면 행정이 좀 잘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막상 내무부에 온지 13년 정도가 되니 내무부가 나름대로 지방자치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무부와 총무처가 합쳐져서 행정자치부가 됐는데 (구) 총무처 일은 각 부처의 일을 조정하는 기능이지만 (구)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되어 있는 업무를 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내무부 쪽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 지 행자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

세 가지 역할을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전국의 248개 자치단체의 역할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항상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하면서 현재 실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하고 고충을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 전체 목표와 국가시책과 지방간에 조화를 이루게 하는 역할이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많이 한다. 자치단체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행자부가 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역할은 지방자치 248개 단체의 각각의 특별성과 특수성, 다양성과 여건을 고려한 자치단체간의 균형 및 이해조정을 해 주는 역할이다. 이 역할 중에 특히 재정분야는 돈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거시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 명칭이야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사용료 수수료가 됐든 전체 총 GDP 중에 얼마를 조세로 내서 그것을 행정으로 쓸 것인가 하는 조세부담의 문제부터 결정해야 된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전체 수입 중에 50%~70%를 세금으로 내서 행정을 하는 곳이 있고, 자본주의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을수록 민간부분 위주로 가는데는 최소한 조세는 적게 내고 행정을 하는 그런 문제이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든 국가가 하든 간에 전체적으로생각했을 때 수입측면을 국민한테 얼마나 부담시킬 것인가를 우선 판단해야 되고, 두번째 조세로 얼마 냈으면 그 중에 국가에서 얼마 쓰고 지방에서 얼마 쓸 것인가 하는 것이 합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처음 지방자치를 할 때 의회를 만들고 권한을 지방

으로 넘기면서 그런 합의가 없었다. 재원배분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 없이 지방자치를 실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방의 재원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점점 더 국세위주로 가는 데에 대한 문제이다. 국가와 지방세비율이 75%:25%이던 것이 81:19%로 되고, 지금은 18%로 내려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문제보다도 과연돈을 지방에서 쓰는 것이 얼마고 국가에서 쓰는 것이 얼마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생각한다.

지방자치가 일찍이 시작된 영국의 경우 지방에서 걷는 돈은 카운슬텍스 하나 뿐이 다. 세금은 모두 국가에서 걷는다. 즉 국가에서 돈을 모두 주면서 지방자치시키는데, 그만큼 돈이 내려가면서 통제도 많이 따른다.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서 많이 걷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지방세로서 내야 자기 스스로가 쓰는 데에 대해서 지니는 책임감과 참여의지 의 문제이지 국세가 지방세로 많이 넘어간다고 해서 현재 받고 있는 교부세. 양여금 이나 국고보조금만큼 다 받느냐하는 문제와는 별개이다. 단지 재원배분의 문제일 뿐 이다. 현재 일본은 전체의 재원 중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2:1의 비율로 쓰고 있 다. 우리나라는 50%:50%라고 얘기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55%를 지방에서 쓰 고 45%를 국가에서 쓴다고 얘기한다. 기획예산처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국가 세금 받은 것 중에 교부세, 국고보조금, 양여금으로 간 돈을 지방에 더해서 계산을 하고, 외국의 경우처럼 교육자치를 지방에 합해서 계산을 하니까 45%:55%라고 얘기를 하 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50%:50%인데 오히려 지방이 적게 쓴다. 그 이유는 기획예산처는 국세가 가장 안정적인 세원이라고 국세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예산 규모 중에 세금이 아닌 기금 등의 세외수입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출 규모 에서 따져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교육을 지방으로 본다하더라도 우 리는 교육자치를 엄연히 별도로 분리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계산하니까 거꾸로 국가가 55%를 쓰고 지방이 45%를 쓰는 것이다. 지방재정문제를 기본으로 놓고 얘기를 해야 한다. 모든 법은 국 회에서 만들어지는데 부담관계 또한 법에서 정한다.

행자부에서 그런 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행자부 입장에서는 이런 업무가 국가 시책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법으로 정할 정도가 되면 그건 국가가 해야 되는 것

이고 100% 국가에서 내야된다고 보는데, 그쪽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사실 법으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고유의 업무고, 또 지방에서 하고 싶어해서 우리가 그것을 의견을 쓰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얼마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움하는 것이 국고보조금의 부담문제이다. 이 부담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역할을 우리 행자부에서 계속하고 있다. 그러다보면 행자부가 국가기관이면서도 기획예산처의 다리를 잡는다고 얘기한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사정이 이렇고 의견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나 시도지사 협의회의 사무국, 연구기관에서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고, 또한 지방자치 학회에서도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작년 우리가 교부세율을 13.27%에서 15%로 올렸더니 재경부에서는 재원배분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과 관련되어서 지방에 뺏겼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빼앗긴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손을 댄 것이 국고보조금이다. 보조율을 낮추고, 필요 없는 사업은 사업에서 없애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받는 부처 에서는 모두 합의를 해 줘 버렸다. 행자부 입장에서는 보조사업을 없애서 지방에서 사업을 안 하면 상관없지만 사업할 경우 결국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해야 되는 거고, 보조율이 낮아지면 낮아진 것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물론 돈 많은 자치단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수입이 없는 군이나 농촌에서는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된 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보조율을 정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의존재원이 약 35%인데 그것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 어야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줄였다 내렸다하면 지방자 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 돈 줄인 것만큼 교부세로 목돈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 면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방의견을 들어서 하자고 제시했는데 지역적인 것 은 협의가 됐는데 정책적인 것은 협의가 힘들다.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한 테도 얘기해 봤지만, 작년에는 사실 하고 싶은 사업을 못했다. 그런 역할을 행자부에 서 시도지사 협의회의 명의로 하는데 그런 재원확충 문제 중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가 져오는 문제는 자치단체와 행자부가 같이 해야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많이 주면 행사나하고 큰 청사나 지으면서 생산성, 효율성 없이 사용하는데 왜 자꾸 돈을 주느냐고 얘기한다. 그러

면 우리는 하나의 케이스를 보고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전체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경비 지출에 의해서 지도도 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한다는 것을 수없이 설명한다. 그 중에 재정관리제도라고 하는 것을 행정자치부 재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재정관리제도가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통제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물론 통제적인입장도 있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통제라기보다 자치단체가 돈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쓰게 만드는데 있다. 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사업을 할 때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하게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이러한 원칙 하에서 이런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예산 편성지침을 보낸다.

그 다음에 지방에서 빚을 내서 사업할 경우에 지방채 승인을 받는데 "승인을 받아서 하고, 지방채는 이렇게 해라"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운영하자는 제도인데, 예산을 쓰게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 이런 통일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금고지정을 어떻게 하라는 등의 방향 제시를 하며, 사후에 그 결산한 것 전체를 분석해서 자치단체별로 같은 잣대를 가지고 비교해서 제시하면서 그것이 다음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영에 피드백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자칫 잘못 보면 통제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의 취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 계획제도인데, 5년 계획이다. 어떤 계획 위주보다도 통계 위주로 이루어진 것이 국가예산제도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기 때문 에 국가는 국회, 지방은 지방의회가 통제하기 좋게 다듬어진 것이 소위 예산제도다.

일반 사기업에는 없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제도들은 상당히 필요하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1년 단위로 하다보니 민원이 발생하고, 또 단체장이 오면 즉흥적으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보라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당히 형식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점점 더 실효성있게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 외에 국가에서 들어가는 국고보조금, 양여금, 특별교부세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않는 사업은 일단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투융자심사도 마찬가지이다. 무슨 얘

기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적이 아닌 즉흥적으로 한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것이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못하게 했더니 자치단체에서 중기지방계획을 연초에 만드는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을 연말에 수정해서 오히려 거꾸로 예산서에 맞춰서 중기 재정계획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계획의 기본취지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예산제도가 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재정 자체를 위해서 계획하는 등 실효성 있게 하고자 만들었지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는 그런 의미에서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든가 지원제도와 연계해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투융자심사제도인데 지금 2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중앙에서 심사하고, 30억원 넘는 것은 상급 시도에서, 30억원 이하는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 심사 자체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심사를 받지 않으면 못하게 하니까 통제로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투융자심사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제일 잘하고 있다. 돈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입장에서 투융자심사를 정확히 해야 사업이 중복되느냐, 하다가 중단될 거냐 하는 것이 미리 체크가 되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투융자심사를 해서 사업시행을 했다가 중간에 재원조달이 안 되어서 중도에 그만 둔 사업이약 7.8%이다. 중단된 것만 그렇고, 사실 계획은 3년 계획 세워 놓고 5년~7년까지가는 것이 있다. 재원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착공식부터 하는 것은 지방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투융자심사를 하라는 얘기는 사업이 중복된 것은 없는지, 다시 말해서 국가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체크하고, 이 돈은 과연 재원이 몇 년 뒤에 어떤 돈으로 채워 넣으면 되는지, 국가에서 지원이 얼마가 되고 나머지 지방채는 얼마 하는지 등을 체크해 보고 넘어 가자는얘기이다.

이 제도는 지금 상당히 실효성 있게 움직이고 있고 행자부에서 조금씩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강화시키는 방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한 경 우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고, 금년부터 교 부세 감액제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겠다는 것이다. 상당히 통제가 강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 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 쪽에서는 통제 위주로 일일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통제하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투융자심사제도는 제도 자체가 있는 것으로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 교부세 감액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감액 안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통제를 해 보라는 그런 의미이지 그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도 자체도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성을 부여해 주고 지방의 의견을 거의 다 받아 주고 있지만, 민원 또는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했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인데 옛날에 행정자치부가 광역시도의 의회 역할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이 곧 승인 나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지침 자체가 상당히 중요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편성의 승인은 지방의회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자치구 의회가 알아서 할 성질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경쟁이 되어서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은 통일적으로 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제일 큰 것이 자치단체장의 실적 업무추진비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다. 기준이라면 그 이하로는 하되 이상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들이 쓰다 보면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정이 있다. 요새 좋은 현상이 나오는데 서울시의 경우 요즈음 NGO의 활동으로 그 돈을 못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그냥 두면 서로 경쟁이 되어서 제주도도 지사고 경기도도 지사인데 '경기도지사보니 활동비 많이 쓰는데 나도 좀 써야 되겠다'는 식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통제를 좀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가 사회단체 보조비이다. 사회단체가 내거는 대의명분은 모두 그럴 듯 하고 이러이러한 회원들 가지고 이런 사업하겠다고 오면 앞으로의 선거에 줄 영향을 생각해서 안 된다고 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그 돈을 집행하는 절차와 행정에서 직접 하는 절차와는 다르다. 행정은 일일이 하나하나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을 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게 법에 맞나 안 맞나 감사를 하는데 사회단체에 돈을 주면어떤 식으로 쓰는가? 아마도 과일이라든가 채소 이름이 없어 가지고 아가씨 선발대회를 못할 것이다. 그 사업할 때 자치단체가 사회단체 앞세워서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사업할 것, 다리 놓고 안 길 포

장하는데 쓸 돈이 안되니까 그것을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기준을 정해준 것이 소위 풀 보조금의 상한선을 제한한 것이다. 그리고 정액으로 가야 될 것은 정액단체를 정해서 준다. 그래서 그것은 생각해 보면 오히려 골치 아파서 풀어놓으면 좋겠지만 풀어놓으면 자치단체에서 힘들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의회를 운영하는데 의회 운영의 경비에 대해서 의회마다 통일이 안 되니까 우리들이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시험관리수당이라든가 숙직수당을 주는데 국가는 얼마 주는데 지방에는 얼마를 주고 하는 문제를 국가와 맞춰서 보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보수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자치단체가 고용주가 되어서계약을 맺는 일용근로자들이 문제이다. 사실 그것은 피하고 싶지만 임금에 대해서 자치단체들끼리 서로 비교가 되니까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해서 민노총의 의견을 받아서내려보내주고 있는데 그것도 지방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다.

그 외에 하는 것은 사실 자치단체에서 이런 방침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권고사항이다. 원래 예산지침은 법에 의해서 나가는 법령적인 효과가 있는데 법령효과가 있는 것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전적으로 지방의회에서 판단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지방의 의사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지침 자체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방이 원하면 계속 존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

그 다음 지방채 관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승인하는 제도로는 맞지 않다고 본다. 지방채라는 것은 돈을 빌려서 10년 내지 30년 뒤에 갚는 것인데 그 부담을 지금현재 세금을 낸 사람한테 부담을 시킬 것이냐 후세들한테 부담을 시킬 것이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받아서 갚아가며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세금을 걷어서할 것이냐의 판단문제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승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에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극히 일부고, 물론전체로 봐 가지고는 우리가 35%라 하지만 서울시나 경기도와 같은 큰 단체를 빼면자치단체는 거의 50% 이상을 국가에서 돈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지방채를 내서 나중에 못 갚았을 때 책임 소재의 문제, 지금 현재 지방재정을 꾸려 나가는 그 재원은 결국 50%는 국가에서 부담하는데 국가에서 부담하면

최종적으로 책임은 또 국가에서 진다는 얘기이고 나중에 지방채 해서 부도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자치단체가 회사처럼 문 닫고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자치단체는 국가가 있는 한 영원히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지방채문제를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승인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방채의 승인을 요청하면 해 주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

현재 지방채가 견제 당한 곳이 부산, 대구, 광주인데 이유는 부채상환비율이 20%가 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부채상환비율이 20%가 넘는다는 얘기는 일년 예산 중에 20%를 그 해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를 뺀 것이 20%라는 것이다. 우리가 월급받아서 20%를 빚 갚고 난 뒤에 80% 가지고 쓰려고 하면 재정이 경직되는데 마찬가지로 작은 자치단체는 잘못하면 인건비를 못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재정을운영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20%라는 선을 봐 가면서 하는데, 군 같은 경우에는 10%만 돼 버려도 벌써 재정운영을 못할 것이다. 어떤 자치단체는 군수가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교부세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그 돈 가지고 월급을 줘야 될 형편이 되더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거기서 20% 떼서 이자 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군 같은 경우는 돈만 생기면 빚부터 갚아버린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해서는 단체장부터 잘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로 보지 않는다. 지방채가 총 18조원 되는데 이것이 전체 예산으로 따져보면 한 20% 정도가 된다. 1년 예산의 20% 정도가 총 빚인데 일본은 165%이다. 1년 지방예산의 165%인데, 일본이 왜 그리됐는냐 하면 지방채가 소위 교부세 총액 보존제도 한다고 하면서 부족한 것은 모두 빚을 내서 해주고 있다. 현재 일본의 가장 큰 문제가 지방채무 문제이다.

지방의 채무는 국가채무하고 성격이 틀리다. 국가는 국가 재정적으로 봐서 경기가 침체되면 재정적인 역할을 해서 재정을 많이 풀기도 하고 한국에서 돈을 빌려 와 가 지고 재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재정은 원칙적으로 균형수지를 맞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이다. 그래서 지방에 대해서는 통제문제인데 이 문제는 일 본도 그렇고 영국도 국가에서 승인을 한다. 일본은 일부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위임을 하든지 일부 문제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든지 그 런 방향으로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전관리제도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앞으로 서서히 없어져야 되고 사후재정관리제도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후재정관리

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쓰고 있는 것을 같은 잣대로 분석해서 같은 예산 규 모, 같은 인구를 가진 단체의 1년에 치르는 행사의 수ㆍ집행내역을 그냥 수치로 보여 주는 것이다. 그것을 지방의회가 보고, 지방주민이 봐서 행사를 너무 많이 하면 줄일 것이 없는지 판단해서 줄이게 만들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자치단체가 비교를 시키고 전직 단체장과 현직 단체장이 비교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자료를 주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모두 정보화해서 실시간으로 제 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 해서 소위 지방재정정보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체제를 예산관계만 분석하는 것보다는 기업체처럼 복식부기 관련해서 분석을 하고 자 산이나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 추 진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쓴 예산을 재정을 분석 해서 어떤 것을 어떤 경우에 쓰고 어떤 부분이 약하고 이런 것을 모두 지표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 개발된 지표가 10개이고 보조지표는 29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검증시켜서 주민들이 보아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공개를 해서 주민에 의한 통 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그리고 분석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자료로 쓸 것이다. 그것만 잘되면 사전적으로 하는 것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바라고 만약에 통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건 의를 해 주면 충분히 판단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바꿔 보도 록 노력하겠다.